

돈 된다면 뭐든지...범죄 불감 10대들

쉽게 돈 번다는 말에 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거리낌없이 가담 미성년자 죄의식 없이 범행 잇단 적발...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
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 등 30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 11명이 10대 미성년자였다. 동네 선배
A씨는 "차에 타고만 있으면 된다"며 공범을 늘렸
다. 차량 동승자가 많아 합의금이 많아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한 번에 30만원씩 줄게. 절대 안 걸
려,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10대 아
이들은 '고액 알바비' 벌겠다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

담하고 있는 셈이다.
주범인 A씨도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발을 들였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동승자를 늘리거나 같은 차로 계속 사고를 내
면 들길 가능성이 커 렌터카를 쓰는 수법은 성인들
못지 않았다.
A씨 등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들이받거나(5건) 차량 두대에 나눠
타고 서로 충돌해(3건) 보험금을 받아냈고 시월

물을 일부러 들이받은 단독사고(10건)를 내 보험금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10대 청소년들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 최근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거리낌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범죄 형태도 무면허·음주에 차
량털이,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하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죄의식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6월까지 교통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
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견줘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강력·폭력·재산 범죄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
3139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10대 미성년자 범죄는 어른들 못지 않게 대담해
지고 있다. 지난 5월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액 역할
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고교 3학년생 B군은 '꿀알
바'를 하겠다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SNS
로 찾아가 지시를 받고 18일 만에 12명에게 1억
7800여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겼다. 'OO캐피탈
직원입니다'고 말하고 돈을 건네받아 가까운 은행
에 입금하고 얻는 건당 3%의 수수료가 욕심나서
아무 죄의식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기에도 젊은 10대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오토바이 면허는 쉽게 딸 수 있는데
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쉽게 가담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사회 경향이 부족한 학
생들이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광산지역에서 붙잡힌 중학생(14)은
'차량 털이'로만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또래 8명의 중학생들도 서구에서도 차량을 돌려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돈을 쉽
게 벌 수 있는 생각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쁘다
는 생각보다 앞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훔친 차량을 타고 무면허로 곳곳을 돌아다니다
적발되는 10대 운전자들은 경찰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름...낙엽 치우는 소리 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가로수길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전동송풍기를 이용해 낙엽을 치우
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자체 무소신 행정 질타한 법원

"강진군 집단민원 내세워 액비처리시설 공사 중단 처분 위법"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내세워 환경처리시설
공사를 중단시킨 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비(液肥·액체상태
로 된 비료)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익사업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공사 책
임을 미루기만 하는 자치단체의 무소신 행정을 질
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영
농조합법인이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
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전남도의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6년 5월 강

진군 군동면 화산리 일대 5507㎡ 규모로 액비처리
시설을 짓겠다고 강진군의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8
월 업체와 시설 공사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집단 민
원 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A법인은 이후 민원
으로 인한 공사 중단 장기화로 개발행위허가 만료
기간인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다
고, 같은 해 말까지도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강진
군의 보조금은 2015년부터 두 차례 이월돼 2017년
을 넘기면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A 법인은 강진군의 보조금 교부 취소 결
정에 따라 2018년 강진군에 보조금(10억5000만
원)을 반납하고 이듬해 개인자금으로 공사를 진행
했는데 강진군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사중
지처분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A 법인 청구를 기각
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진군이 공사를 중지시켜 얻
을 수 있는 공익보다 공사가 좌초돼 A법인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A 법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를 중지토록 한 강진군의
6가지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진군이 공사 중지
처분 사유로 꼽은 '민원 발생 시 공사를 즉각 중단
하고 민원해결 뒤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위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의 경우
"강진군이 제시한 민원은 액비처리시설 설치 자체
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진군은 모든 책임을 A법
인에게 미루기만 했을 뿐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
는 등 행정상 지원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단체의 소극 행정을 꼬집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판결 2제...무죄 이유는?

계좌에 들어온 돈 전달... '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방지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순, '편법을 이용해
대출받아드리겠다'는 취지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
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상담사는 "우
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당시 계좌에서 인출해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
아야 한다"며 통장과 주민등록증 등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했고, A씨는 상담사의 설명에 따라
대출 신청을 했다.
A씨는 이후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6월
20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원을 인출,
인근 도로에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
달했다.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 피해자에게 가로챈 '범죄 수익'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기범죄
방조라고 보고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
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모자
나 마스크를 쓰고 ATM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돈을 인출한 점, 범행
뒤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직접 경
찰서를 찾아 사건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
스피싱 범행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그
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인근 도로에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
달했다.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 피해자에게 가로챈 '범죄 수익'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기범죄
방조라고 보고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
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모자
나 마스크를 쓰고 ATM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돈을 인출한 점, 범행
뒤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직접 경
찰서를 찾아 사건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
스피싱 범행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그
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장해진단 숨기고 보험금 청구... "고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요추·경추 치료 및 장해진단서 발급 사실을 숨기
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
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
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진단 받은 '요추 추간판탈
출증'과 2013년 발급받은 '경추부(5-6번) 추간판
탈출증 장해진단서' 사실을 숨기고 상해보험 계약
을 체결한 뒤 '넘어져 다쳤다'며 후유장애보험금
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5년 이내 의사로부
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입원,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행위를 한 적
이 있습니까', '현재 신경기능 장애가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8월, 넘어져 다친 뒤 이때

부터 9개월 넘게 4개 병원에서 10여차례의 치료를
받았고 2017년 6월 '요추추간판탈출증'인 후유장
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
구했다. 이렇게해서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후
유장애보험금 3500만원 중 35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보험사기를 의심
한 보험사의 거절로 지급이 보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A씨
의사나 행위로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
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 원인
이 된 상해사고 까지 약 3년 간의 시간이 흐른 점,
보험계약 체결 이후 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4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을 들어 검사
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